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4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aloging Rules in Korea

- From 1954 to 1980 -

도 태 현(Tae-Hyeon Doh)*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체계의 특성 |
| II. 『韓銀圖書編目法』 | 3. 내용의 특성 |
| 1. 편찬경위 | IV. 『韓國目錄規則』 |
| 2. 체계의 특성 | 1. 편찬경위 |
| 3. 내용의 특성 | 2. 체계의 특성 |
| III. 『東書編目規程(草)』 | 3. 내용의 특성 |
| 1. 편찬경위 | V. 맺는말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속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표준화 시기'(1954년의 『韓銀圖書編目法』부터 『KORMARC 단행본실험용포맷』이 개발된 1980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 한국에서 편찬된 목록규칙으로는 『韓銀圖書編目法』, 『東書編目規程(草)』, 『韓國目錄規則』 초판과 수정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목록규칙의 체계, 내용의 특성을 개관하였다.

주제어 : 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Abstract

This study is a part of the serial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aloging rules in Korea, and focus on 'the period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from 1954 to 1980). In this period, *Han-Ún Catalog Rules*, *Dongseo pyeonmoggyujeong(cho)*, *Korean Cataloging Rules* 1st ed. and 2nd ed. were published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se cataloging rules.

Key Words : Cataloging Rules, Korean Cataloging Rules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현정보학전공 부교수(thdoh@hyomin.dongeui.ac.kr)
· 접수일 : 2001. 8. 14 · 최초심사일 : 2001. 9. 5 · 최종심사일 : 2001. 9. 11

I. 머리말

목록규칙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목록규칙의 제정을 위한 토대를 삼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속 연구의 한 부분으로써 그 첫 번째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권 2호(2000. 6)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연구이다.

앞서의 연구에서 우리 나라 목록규칙 변천과정을 ① 단일기입목록 시기(고려시대의 대장목록부터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된 1923년 이전까지) ②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 시기(1923년부터 『韓銀圖書編目法』이 간행된 1954년 이전까지) ③ 국제 표준화 시기(1954년부터 우리나라 자동화목록법의 기점이 되는 1980년 이전까지) ④ 자동화목록 시기(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 4단계로 구분하였고, 그 중 '단일기입목록 시기'와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 시기'(고려시대부터 1954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에 이어서 '국제표준화 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영미로부터 시작된 목록규칙의 국제적 표준화 경향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서명을 기본목록의 표목으로 하는 동양적 전통에서 벗어나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목록규칙들이 편찬되었다.

저자명을 기본목록의 표목으로 삼는 원칙은 파니찌(Anthony Panizzi)의 대영박물관목록규칙 아래 영미계 목록규칙의 바탕이 되었다. 1908년 최초의 국가간 공동목록규칙인 영국도서관협회와 미국도서관협회의 *Cataloging Rules : Author and Title Entries*(일명 *Anglo-American Code*라고 함), 1949년 ALA 목록규칙을 거쳐 1960년 루베츠키(Seymour Lubetzky)의 *Code of Cataloging Rules*(이하 *CCR*이라고 함)에 이르기까지 저자명을 기본목록의 표목으로 채택하는 원칙은 영미계 목록규칙의 일관된 경향이었다.

한편 영미계 목록규칙과 독일계 목록규칙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목록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IFLA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IFLA는 1954년 영미(Anglo-Saxon)와 독일의 목록 전통 사이에 생기는 주요 차이점을 조화시키기 위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만들었으며¹⁾ 이 워킹그룹의 5년간에 걸친 활동 결과 1959년 런던에서 국제목록원칙회의를 위한 예비회의(the preliminary meeting)를 거쳐 1961년에는 파리에서 역사적인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ICCP)를 개최하였다.

1) 洪淳英譯, "國際的 目錄一致에로의動向", 『도협월보』 1권, 3호(1960. 5), p. 11.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는 목록의 2대 구성요소인 ‘표목부’와 ‘기술부’ 중 ‘표목부’에 관한 원칙이 결의되었으며, 1949년 판 ALA 목록규칙의 표목 규칙 간소화를 위한 연구 결과 CCR을 발표하였던 루베츠키의 초안이 대부분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은 국제적 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가 개최되기 전인 1954년에 이미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한 『韓銀圖書編目法』이 편찬된 바 있다. 따라서 『韓銀圖書編目法』이 편찬된 1954년을 ‘국제 표준화 시기’의 기점으로 잡는다.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 후에도 IFLA에 의한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제정, 자동화목록법(MARC)의 국제 표준포맷 개발 등 목록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며,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나라의 목록규칙 국제 표준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시기는 현재까지도 연장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록업무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목록규칙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동화목록 시기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KORMARC 실험용포맷이 개발된 1980년을 자동화목록 시기의 기점으로 보고 이후부터는 따로 구분하였다. 또한 1983년의 『韓國目錄規則』3판도 목록을 기계가독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ISBD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이어서 자동화목록 시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으로 ‘국제표준화 시기’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에 몇 종의 특기할 만한 고서목록규칙이 편찬되기도 하였으나 분량이 과다하여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는 주로 문헌자료를 통한 역사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관련인의 서한도 인용되었다.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이란 ‘저자명을 기본목록의 표목으로 채택하는 원칙’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저자명을 채기할 수 없거나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합리한 문헌들도 있으며 따라서 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의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목록규칙에서는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기타 특수표목을 기본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목록규칙’이란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는 서명이나 특수표목을 기본표목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II. 『韓銀圖書編目法』

『韓銀圖書編目法』은 고재창(高在昶)에 의해 편찬된 목록규칙으로서 1954년 한국은행조사부에서 프린트판으로 출판되었다. 이 규칙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한국은행의 도서를 정리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지만 일반 도서관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목이나 기술에 관한 규칙 외에도 목록실무와 관련된 도구와 요령 등의 방대한 부록을 갖춘 500여 쪽에 이르는 저작이다.

1. 편찬경위

편찬자인 고재창에 대해서는 『韓銀圖書分類法』과 『韓銀圖書編目法』을 편찬했다는 사실 외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韓銀圖書分類法』과 『韓銀圖書編目法』 외에는 남아 있는 저작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세익의 기록에 의하면 고재창은 「우리 나라 근대 도서관사에서 가장 사서다운 사서, 전형적인 사서」라는 칭사를 받았다고 했으며²⁾ 해방 후부터 1957년 40을 갓 넘은 나이로 행방불명될 때까지 그는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수산대학도서관, 광주의대도서관, 중앙대학도서관, 해군사관학교도서관, 한국은행도서실, 국회 도서관 등 무려 8군데의 도서관을 옮겨가며 근무하였고, 특히 초창기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서구 문명권인 뉴질랜드에 유학한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고재창은 『韓銀圖書編目法』의 편찬 동기에 대하여 스스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나라에 도서편목의 기준이 될 코오드나 루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간된 것으로 이를테면 K.C.R.(『朝鮮東書編目規則』 -朴奉石編)이 있으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東書編目에 한할 수 있는 것으로 따로 西書에도 공용할 수 있는 편목법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다.

...

K.C.R.이 주로 일본의 『和漢書目錄法』을 답습함으로써 서명기본기입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편목의 체계 밑에 구상되어 있는데 요즘 전후의 일반 목록학계의 대세는 저자기본기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일본에서도 종래의 『和漢書目錄法』을 방척(放擲)하고 東

2) 金世翊, "情熱과 悲劇의 司書 高在昶 : 草創期의 圖書館人 시리즈 1", 『도서관』 37권, 2호(1982. 3, 4), p. 3.

3) 위의 글, pp. 3-10 참조

書, 西書 공용의 목록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저자를 기본기입의 표목으로 하고 있다. 본시 서서는 일반적으로 저자를 기본기입 Main entry 하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

근래 국제적인 서지학 운동이 피차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고 도서의 형태나 내용이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접근화의 일로를 걷고 있고 연합목록의 편찬사업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편목법의 채택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⁴⁾

즉 편자는 『韓銀圖書編目法』의 편찬 동기가 동서와 양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록규칙을 편찬하는 것, 일제시대 이후 『朝鮮東書編目規則』에 까지 이어져 오던 서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는 관습을 탈피하여 당시 목록규칙의 국제적 경향이었던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목록규칙을 편찬하려고 했던 것임을 밝히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韓銀圖書編目法』을 편찬함에 있어 참고한 주요 문헌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4281年 10月
2. 大内直文 編 『洋書の目録』 東京, 理想社, 1952
3. 大佐三四五 『洋書目録法の理論と實際』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37
4.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雜誌》 (창간호)
5. 田中敬 『和漢書目録法』,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昭和14
6. 朝鮮語學會 『外來語表記法統一案』 同會, 1941
7. S. G. Akers, *Simple Library Cataloging*, 3rd ed rewrite, Chicago, A.L.A., 1944
8. A.L.A., *Catalog Rules : Author and Title Entries*, comp. by Committee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ed. Chicago, A.L.A., 1908
9. A.L.A.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 prep. by a Special Committee … Chicago, A.L.A., 1942⁵⁾

위의 문헌들 중 박봉석의 『朝鮮東書編目規則』은 서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는 규칙이라는 하지만 저자명표목에 관한 규칙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⁶⁾ 다나카(田中敬)의 『和漢書目録法』에서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저자나 서명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기본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문의 설명은 편이상 저자명기본표목원칙에 따르고 있으며,⁷⁾ 오오사

4) 高在和 編, 『韓銀圖書編目法 : 東書·西書共用』. 서울 : 韓國銀行調查部, [1954]. 편자서문 중에서.

5) 위의 책, 권두.

6)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4281[1948]. pp. 17-18.

7) 田中敬, 『和漢書目録法』. 東京 : 早川圖書, 昭和14[1939]. pp. 75-8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 3호)

(大佐三四五)의 『洋書目錄法の理論と實際』는 여덟 번째 참고문헌으로 기록된 ALA의 *Anglo-American Code*를 기초로 한⁸⁾ 양서목록 지침서이므로 이들 문헌들은 모두 저자명표 목이나 저자명기본표목원칙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편자는 『韓銀圖書編目法』의 편찬에 당시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따르고 있는 목록규칙과 이에 관련된 저술들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체계의 특성

『韓銀圖書編目法』 편찬에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참고되었다고 하였지만 전체적 구성은 『朝鮮東書編目規則』과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서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韓銀圖書編目法』은 명확하게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韓銀圖書編目法』의 체계를 *Anglo-American Code*와 비교해보았으며, 참고로 『日本目錄規則』(이하 NCR이라 함) 1952년 판과도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韓銀圖書編目法』, *Anglo-American Code*, NCR 1952년 판의 비교표

『韓銀圖書編目法』	<i>Anglo-American Code</i>	NCR 1952년판
제1장 총칙	Entry and Heading	제1장 總則
제2장 표목	a) Personal authors - under whom as author	제2장 標目 I 標目の選び方
I 표목의 선정	b) Personal authors - under what part or form of name	
가. 저자표목	c) Corporate bodies as author	II 標目の形式
나. 서명표목	d) Title entry	a 個人著者
다. 특수표목	e) Miscellaneous rules	b 團體著者
II 표목의 형식		c 書名及び特殊な標目
가. 개인저자		제3장 圖書の記述
나. 단체저자		
다. 표목의 국어		
제3장 기술일반		
I 원칙		I 標題
II 단행사		II 出版事項
가. 표제		III 對照事項
나. 출판사항		IV 註記事項
다. 대조사항		제4장 副出記入
라. 주기사항		제5장 分出記入
마. 부출기록		제6장 參照
바. 참조사항		
III 축차간행서 및 정기간행서		
IV 특수자료		
V 부기입		
제4장 기입법(동서, 서서 공용)		
제5장 편성 - 목록의 종류와 그 배열		
제6장 부록	Appendixes	

8) 大佐三四五, 『洋書目錄法の理論と實際』. 東京: 日本書館協会, 1937. pp. 45-46.

『韓銀圖書編目法』은 기본적으로 기본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관한 규칙, 기술 및 부출, 참조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특수자료의 목록규칙, 카드의 기입형식, 목록편성에 관한 규칙, 방대한 양의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glo-American Code* 역시 기본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관한 규칙, 기술 및 부출, 분출, 참조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두 규칙은 구성 면에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표목의 선택원칙도 일치한다. 두 규칙은 모두 우선적으로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는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저자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나 정기간행물 연감 등과 같이 저자명으로 기본표목을 삼을 수 없는 문헌에 대해서는 서명표목 및 특수표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편자가 이 규칙의 편찬에 참고한 문헌들을 열거할 때 NCR 1952년 판을 들지는 않았지만 『韓銀圖書編目法』의 기본적 체계가 NCR 1952년 판과도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표목의 선택에 관한 규칙들을 대조해 보면 그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NCR 1952년 판의 기본표목에 관한 규칙의 상당 부분이 다나까(田中敬)의 『和漢書目錄法』에서 유래하였고 고재창도 역시 이 『和漢書目錄法』을 참고함으로써 두 규칙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자 자신이 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NCR 1952년 판이 참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CR와 同軌에 있던 NCR(日本漢書目錄法)이 전후에 J.L.A.(日本圖書館協會)에 의하여 대개정이 단행되어 완전히 舊貌를 일신하고 세계목록학계가 또한 협동의 기운에서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태동하고 있는 이때 고립된 방향을 걸어갈 수 없는 일이며 … 일반대세와 同步 同調할 수 있는 편목법의 필요를 항시 느끼고 있었으므로 ...⁹⁾

위 내용 중 전후 일본도서관협회에 의해 개정된 NCR이란 ALA 목록규칙 1949년 판을 참고하여 제정된 NCR 1952년 판일 것이며, 또한 NCR 1952년 판은 공간되기 전부터 그 내용이 《圖書館雜誌》에 게재된 바도 있다.¹⁰⁾ 따라서 편자는 이 때 이미 NCR 1952년 판을 직접 보았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황과 『韓銀圖書編目法』의 체계가 NCR 1952년 판에 근접한 것, 규칙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韓銀圖書編目法』의 편찬에는 NCR 1952년 판이 직, 간접으로 참고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약 편자가 NCR 1952년 판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참고하였다면 ALA 목록규칙 1949년 판이 간접적으로 참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9) 高在昶 編, 앞의 책, 편자서문 중에서.

10) 日本圖書館協會, 『日本目錄規則 1952年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53. pp. 5-6.

위에서 볼 수 있듯이 『韓銀圖書編目法』은 완전한 창안이라 할 수는 없고 앞서 편찬된 우리 나라의 『朝鮮東書編目規則』이나 일본과 영미계의 목록규칙들을 참고한 것이며 편자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단순히 전기한 일본이나 미국의 목록규칙들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치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와 동양 문헌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韓銀圖書編目法』은 우리 나라에서 당시 목록이론의 국제적 경향이었던 저자명기본표목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한 목록규칙으로서 우리 나라의 목록규칙이 국제적 사조에 동승하게 된 기점이 되었으며, 이전의 『朝鮮東書編目規則』과는 달리 동서와 양서의 공용 목록규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韓銀圖書編目法』은 단행본의 표목과 기술에 관한 규칙 외에 연속간행물(축차간행서 및 정기간행서)과 특수자료(음악서와 악보류, 음반, 사진자료, 지도자료, 학위논문)를 위한 규칙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의 부록¹¹⁾에는 ① 대문자 사용법(양서용) ② 번자법(양서용) ③ 약어 사용법 ④ 로마기수법(양서용) ⑤ 로마자 표기법⑥ 동서역대간지년표(自高麗, 至現代) ⑦ 서표(카드) 기입 예 ⑧ 한은용 기입법과 목록편성법 ⑨ 서표 배열에 관하여 - 한은용- ⑩ 편목실무의 요령 ⑪ 인쇄(등사)카드에 대하여 ⑫ 술어 정의 등의 목록작업을 위한 부수적 참고도구나 지침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부록의 내용들은 다른 목록규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이 때문에 『韓銀圖書編目法』이 단순히 목록 작성만을 위한 규칙이라기보다는 편자 고재창의 목록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망라하여 압축한 일종의 목록 편람 혹은 목록학 개론서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3. 내용의 특성

(1) 기본표목에 관한 규칙

『韓銀圖書編目法』에서는 “도서는 개인 또는 단체의 어느 편인가의 저자 밑에 기입한다. 이 총칙은 기본기입의 근본원칙이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것을 적용한다”¹²⁾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료들에 대하여는 서명표목이나 특수표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高在昶 編, 앞의 책, pp. 215-496.

12) 위의 책, pp. 1-2.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무저자 고전·총서·백과사전 및 사전·연감, 연력서(年歷書), 인명록, 상공록, 기타 유사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을 들었고, 특수표목을 채택하는 경우는 성경, 불경 등의 경전류·고대 및 중세의 법률, 현대 법률, 헌법·조약·재판 관계 문서(감정서, 판결서 등)·선박에 대한 해사(海事) 소송문서·선박의 항해일지·탐험대의 기록 등을 들고 있다.

저자명표목은 개인저자와 단체저자로 구분하였으며 그 형식은 한자로 기재하되 배열을 위한 표기를 하도록 하였다. 배열의 편의를 위해 표목을 다시 표기하는 이러한 표목작성 방식은 『和漢圖書目錄法(案)』(1932년)의 원리에 따른 『朝鮮東書編目規則』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배열을 위한 표기는 로마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방공공도서관과 같이 이용 대상자들이 로마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동서의 경우 지정된 한글표기법에 의해 표목을 표기하고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이 규칙에 의한 카드기입 예는 A표 B표 C표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들고 있다. 그 중 A표와 B표는 표목의 발음표기를 로마자로 하도록 한 예이며, C표는 동서는 한글로, 일본서는 가나로 발음 표기하여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배열하는 예이다. 뒤이어 수록된 「한국은행용 기입법과 목록편성법」에서는 “표목의 발음표기는 동서는 그 문자의 구조상 국서(중국서 포함)와 일서로 양분하여 국서는 한글로 적어주고 일서는 일본식 발음대로 가다가나(片假名)로 적어준다”¹³⁾라고 하여 C표의 기입법에 따라 발음표기 및 배열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재창 자신은 동서와 양서의 목록을 혼합하여 배열하기 위해서는 표목을 로마자로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하지만 그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또한 장차 도서관이 확충(장서량이 증가)될 때를 대비하여 도서의 종류별로 목록을 각각 분리하여 배열하도록 하였다¹⁴⁾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우리 나라 도서와 일본서를 혼합 배열하는 것은 양서를 우리 나라 도서와 혼합 배열하는 것과 같다”¹⁵⁾고 하여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이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일본서의 표목을 한자는 우리 나라식 발음으로 읽고 가나는 일본발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자나 가나 모두 일본발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고 일본서를 기타 동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도서와 함께 배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일본어를 표기하는 방식이 통일되지 못하고, 게다가 번자 규칙 마저 통일되지 못하여 일본서 목록의 취급과 배열에 혼

13) 위의 책, p. 434.

14) 위의 책, pp. 434-437.

15) 위의 책, p. 436.

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이러한 상황과, 한편으로 자동화목록의 검색방식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도서와 일본서 목록을 분리 배열하고자 한 고재창의 견해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 기술과 편성에 관한 규칙

『韓銀圖書編目法』에서는 표목을 기재한 후 차행부터 기술규칙에 열거된 순서대로 기술하여 기본목록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단행본의 기술순서는 다음과 같다.¹⁶⁾

- 가. 표제(서명 - 책(권)차, 책(권) - 저자표시 - 판)
- 나. 출판사항(출판지 - 출판사 - 출판년 - 판종)
- 다. 대조사항(권책수, 면(장)수 - 도판표시 - 대소 - 장정)
- 라. 주기사항
- 마. 부출기록
- 바. 사무사항

위의 기술 순서 중 판차와 저자의 기술순서는 다음과 같이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다.

119. 판차. 개정, 증보 등의 판차는 서명[책(권)차를 포함] 다음에 기재한다. 단, 저자표시가 오는 경우에는 저자표시 다음에 기재한다.

121. 저자표시. 저자표시는 서명(책, 권차를 포함)의 다음, 단, 판차의 기재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기재한다.¹⁷⁾

규칙 조문을 나열하는 순서도 판차사항에 관한 규칙이 저자사항의 규칙보다 앞에 놓여 있어 서명 - 판차 - 저자의 기술순서가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NCR 1952년 판이나, *Anglo-American Code(1908)* 등 당시 통용되고 있던 규칙들이 모두 서명 - 저자 - 판차의 순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굳이 판차를 먼저 기술해야 할 이유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특별히 여기에서만 판차를 저자명보다 먼저 기술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편자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서명 - 저자 - 판차의 순으로 기술하도록 한 것이 맞을 것 같다.

기술사항 중 고판본에 대한 판종을 출판사항의 마지막에 기술하도록 한 것은 『朝鮮東書編

16) 위의 책, pp. 51-102에서 발췌.

17) 위의 책, p. 62, 63.

『目規則』의 기술순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부출목록으로써 서명목록은 서명을 기본표목의 위치로 당겨서 기술하되 이때 저자명은 대조사항 다음에 옮겨 기술하도록 하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제명목록은 기본목록의 기본표목 위에 주제명표목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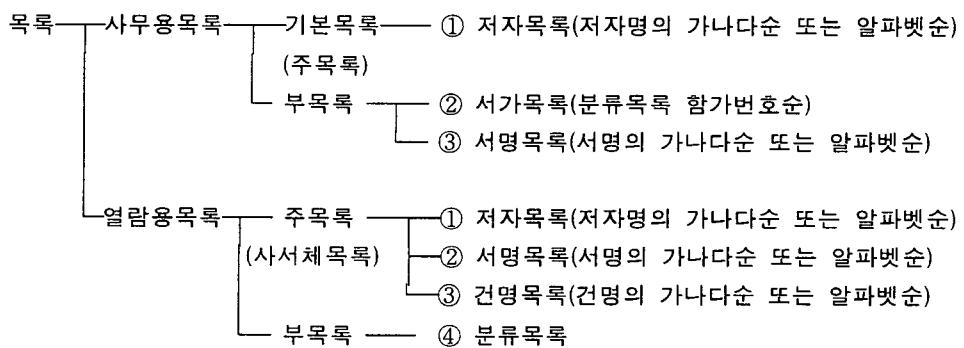
그러나 A, B, C 3종류로 나누어진 카드기입 예의 C표에서는 기본목록 카드를 단위카드(unit card)로 하여 기본표목 위에 부출표목을 기입함으로써 부출목록을 작성하는 방식, 즉 기본목록을 단위카드로 사용하는 목록 작성방식의 예를 들고 있으며, 한국은행 자료실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목록작성 방식은 인쇄카드나 등사카드를 사용한 카드목록의 가장 진보한 목록 작성법이며 우리 나라에서 단위카드를 복사하여 사용한 목록 작성법의 예는 『韓銀圖書編目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구두점 사용에 대해서는 양서는 영미계의 목록규칙에 준하여 구두점을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동서의 경우는 구두법의 사용이 기술사항의 번잡을 초래한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¹⁸⁾

『韓銀圖書編目法』의 제5장 “편성”에서는 도서관에 비치할 목록의 종류와 그 편성체계를 <표 2>와 같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체계는 『朝鮮東書編目規則』의 편성체계와는 달리 저자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고 있다.

<표 2> 목록의 종류와 체계¹⁹⁾



18) 위의 책. p. 147.

19) 위의 책. p. 154.

그러나 한국은행도서실을 위하여 제안하고 있는 목록편성표에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청구기호순 분류목록인 서가목록을 주목록으로 하고 저자명목록을 부목록으로 하였으며, 열람용목록의 사전체목록에서는 주제명 목록을 저자, 서명목록과 분리하여 따로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행자료실에서는 주제명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렇더라도 편자 자신은 주제명목록을 사전체목록에서 분리하여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대규모 도서관들에서 주제명목록을 따로 분리하는 경향과, 장서량의 증가로 인하여 사전체목록의 카드 분량이 방대해지면 검색이 불편한 것, 저자명 서명목록과 같은 목록들과 혼합 배열되어 있을 경우 주제명의 부단한 개신이 어렵다는 것 등을 들었다.²⁰⁾

III. 『東書編目規程(草)』

『東書編目規程(草)』(이하 『東書編目規程』이라 함)은 6.25 동란 이후 미국의 도서관학이 도입되면서 영미계 목록규칙을 비롯해 국제 목록규칙의 경향이었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이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도 점차로 보급되고 있던 즈음에 편찬된 일종의 규칙 초안으로서 박희영이 편찬하였다.

1. 편찬경위

『東書編目規程』은 서문이 없고 출판경위나 출판연도도 밝혀지지 않은 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출판된 등사판 자료²¹⁾만 찾아볼 수 있었다. 김남석은 이 규칙초안이 국립도서관 주최의 도서관실무강습회에서 강의를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55년에 출판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²²⁾

20) 위의 책, pp. 440-442.

21) 朴熙永 編, 『東書編目規程(草)』,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55].

22) 金南碩, 『資料目錄學』, 增補版 大邱 : 啓明大學校出版部, 1985. p. 71.

이춘희는 “『東書目錄規程草案』이라는 책이 1954년에 국립도서관에서 출판되었다”(李春熙, 앞의 책, p.

36) 고 한 바 있으나 이러한 표제의 책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또한 그 보고서의 각주에서는 이 규칙에 대하여 “朴熙永 編, 『東書目錄規程草案』, 서울 : 國立圖書館, 4288(프린트)”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

『東書編目規程』은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한 NCR 1952년 판의 번역을 위주로 하여 편집되고, 그 외에 저자의 도서관 실무경험이나 당시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목록규칙들을 일부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편자 자신이 주장한 바대로 이 규칙은 당시 전국의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²³⁾ 결과적으로 이 목록규칙이 목록이론의 국제적 조류였던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우리 나라의 도서관계에 확산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 체계의 특성

『東書編目規程』과 NCR 1952년 판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규칙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東書編目規程』과 NCR 1952년 판의 체계

『東書編目規程』	NCR 1952년판
제1장 종칙	제1장 總則
제2장 표목	제2장 標目
I. 표목의 선정	I 標目の選び方
II. 표목의 형식	II 標目の形式
A. 개인저자명	a 個人著者
B. 단체저자명	b 團體著者
C. 서명 및 특수표목	c 書名及び特殊な標目
제3장 기술	제3장 圖書の記述
I. 표제	I 標題
II. 출판사항	II 出版事項
III. 대조사항	III 對照事項
IV. 주기사항	IV 註記事項
제4장 부출기입	제4장 副出記入
제5장 분출기입	제5장 分出記入
제6장 참조	제6장 參照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東書編目規程』의 구성은 NCR 1952년 판과 거의 일치한다.

아 『東書編目規程』의 출판연대는 단기 4288년 즉 서기 1955년이 맞는 것 같다.

23) 朴熙永, “東書目錄記入에 있어서의 基本問題”, 『도협월보』 Vol. 14, No. 5(1973. 5), p. 144.

좀 더 자세히 규칙 조문들의 배열과 내용을 비교해보면 NCR 1952년 판의 번역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극히 일부에서 내용을 첨삭하거나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규칙의 내용과 예들의 상당 부분에 이르기까지 NCR 1952년 판을 번역, 전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본표목의 선정 규칙에서 일부 항목들은 배열 순서가 바뀌었으며 또한 내용의 일부가 우리 나라 도서관의 사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기본표목의 형식에서 ‘일본 황실이나 황족의 표목형식’ 등을 빼고 대신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왕과 왕비에 대한 표목형식’을 삽입한 것이나, 대조사항에서 도서 장정의 종별에 따른 단위 구분 유형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교체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미미한 정도에 그칠 뿐 아니라 『韓銀圖書編目法』이나 『朝鮮東書編目規則』의 내용과 유사하다.

『東書編目規程』과 『韓銀圖書編目法』이 이러한 면에서 닮게 된 것은 두 규칙이 모두 『朝鮮東書編目規則』을 참고하였거나, 『東書編目規程』의 편찬자인 박희영이 육이오 동란으로 인한 부산 피난시절 고재창 전영권 남영우 김경일 등과 함께 진해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²⁴⁾ 당시 이들 사이의 목록규칙에 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3. 내용의 특성

(1) 기본표목에 관한 규칙

『東書編目規程』은 『韓銀圖書編目法』과 마찬가지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도서에 기재 여부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도록”²⁵⁾ 하였으며 저자의 범주는 개인명과 단체명을 모두 포함시켰다. 특히 공저서나 합저서의 경우에도 모두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무저자명도서, 족보, 사전류, 연감, 신문, 잡지, 총서 등과 같이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무저자명 고전이나 법률서, 조약, 대통령·행정장관 등의 교서, 항해일지, 재판의 판결서, 해사(海事) 소송기록, 불전, 성서, 기타 종교의 경전류 등은 목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각각 따로 기본표목의 형식을 정하고 있다.

24) 金世煥, 앞의 글, p. 7.

25) 朴熙永 編, 『東書編目規程(草)』, 앞의 책, p. 3.

『東書編目規程』은 표제가 말해주듯이 동서의 목록에 중점을 둔 규칙으로서 표목의 선택과 형식, 기술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간략하게 부출과 분출, 참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韓銀圖書編目法』의 경우와는 달리 표목과 기술에 관한 규칙 외에 목록작업의 실제에 필요한 부수적인 규정들, 예를 들면 목록의 편성체계나 배열규칙 등에 관한 세부적 지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목의 언어에 대한 규칙도 없다. 그러나 규칙 조항별로 삽입된 예들을 보면 표목은 한자어로 채기하고, 번역서의 경우 서양인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다. 후일 박희영이 KCR에서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국내서, 중국서, 일서는 모두 한자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자명의 한자는 고유한 것이므로 표목을 한글로 고쳐서 기입하는 것 보다 한자 그대로 기입하고 배열을 위한 표기를 하는 것이 정연하고 능률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²⁶⁾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東書編目規程』은 표목형식을 정보원에 나타난 형식대로 채기하고, 배열을 위하여 한글이나 일본어로 발음 표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도서의 저자명이 한자로 표시되었던 당시로서는 이러한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 도서에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자동화목록법의 도입과 함께 목록 구성상 표목과 기술이 분리되고 표목이 접근점의 기능만을 갖게됨으로써 이러한 주장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각종 언어로 된 책들이 해당 언어를 잘 해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소용되거나 검색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각각 해당 언어로 표목을 작성하고 해당 언어의 배열규칙에 따라 배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예를 들면 일본서는 일본 발음으로 표기하고 일본어 오십음 순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의 고재창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

(2) 기술에 관한 규칙

기술 사항의 종류와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²⁷⁾

I. 표제

서명(서명, 부서명, 별서명), 권차(권차, 권수), 저자표시, 판

II. 출판 사항

출판지, 출판자, 출판년, 판종

III. 대조사항

26) 朴熙永, “東書目錄記入에 있어서의 基本問題”, 앞의 글, p. 146.

27) 朴熙永 編, 『東書編目規程 (草)』, 앞의 책, pp. 45-74.

권책수·면(장)수, 도판·표 등, 크기, 장정

IV. 주기사항

총서주기

일반주기(표목관계, 표제관계, 출판사항관계, 대조사항관계, 간행, 반포형식에 관한 사항, 내용관계, 그 자료 고유의 사항)

내용주기

이 순서와 내용은 NCR 1952년 판과 거의 일치하며, 이러한 기술 순서의 기본 틀은 1949년의 ALA 목록규칙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韓銀圖書編目法』과 마찬가지로 고서고사본 등의 판종(版種)을 출판사항의 마지막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이 때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동서 목록에 구두점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韓銀圖書編目法』과 마찬가지로 이 규칙에서도 구두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고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술의 예에서도 구두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IV. 『韓國目錄規則』

1. 편찬경위

(1) 편찬배경

당시 우리 나라의 국가적 표준목록규칙으로 『韓國目錄規則』(이하 KCR이라 함)을 새로 제정하게 된 이유를 장일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는 1961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약칭 IFLA) 주최로 개최되었던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채택한 목록원칙을 우리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당시까지 쓰여오던 박봉석씨에 의한 『동서편목규칙』으로서는 더 이상 현대적인 목록 작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큰 자극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IFLA에 의한 목록원칙의 채택이다. 이것은 이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기사화 되었으므로 재론을 하지 않거니와, 우

리 나라에서의 목록원칙의 채택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 KCR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동하였다.²⁸⁾

당시까지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는 박봉석의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는 서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和漢書目錄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결의된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한 목록규칙을 새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KCR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서양의 목록규칙 동향을 번역, 소개하거나 이러한 동향을 반영한 목록규칙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번역이나 연구들은 KCR의 제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1959년 백린이 LC의 *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1957년)를 번역 출판한 『중국, 일본, 및 한국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규칙과 편람』이 있다. 이 규칙은 ALA목록규칙의 동양자료 관계 부분의 개정을 위한 예비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우리 도서관계에서의 활용에 대하여 백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양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이 답답히 지나오는 차에 ALA와 LC의 극동자료정리위원회에서 이 규정을 발표함에 동양자료의 정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되었다.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난문제가 되고 있던 로마자 번자법과 띄어쓰기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해결해 주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표목을 로마자로 번자하는 도서관에서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한글화하고 있는 도서관에 있어서는 이에 기준하여 다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²⁹⁾

이 규칙에서 동양인명표목의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어 구분하는 등의 내용이 후일 KCR 편찬 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백린은 1960년 5차례에 걸쳐 《도협월보》 지상에 「圖書目錄法入門」이라는 실무 강좌를 연재³⁰⁾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목록의 의의와 종류, 기본표목과 기술사항에 관한 설명

28) 張世, "韓國 目錄의 現況과 그 將來", 《도서관》 Vol. 19, No. 6(1974. 6), p. 38.

29) Library of Congress, Processing Department, 『중국, 일본, 및 한국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규칙과 편람』, 백린 역. 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59. 역자 서론 중에서.

30) 白麟, "圖書目錄法入門, 第一回", 《도협월보》 Vol. 1, No. 1(1960. 3), pp. 15-20.

白麟, "圖書目錄法入門, 第二回", 《도협월보》 Vol. 1, No. 2(1960. 4), pp. 17-25.

白麟, "圖書目錄法入門, 第三回", 《도협월보》, Vol. 1, No. 3(1960. 5), pp. 16-20.

을 앞세우고, 자료의 유형이나 목록의 종류별 카드 기재 양식 등을 주로 다룬 목록실무의 지침이었다.

목록의 체제는 저자명기본표목원칙에 의한 것이었으며, 표목형식은 기본목록의 표목만 한 자로 채기한 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기타 부출목록이나 분출목록의 표목은 한글로만 기재하였다.

백린은 이 실무강좌에서 표목을 한자로 채기하고 배열을 위해 다시 한글이나 영문자로 표기하는 것, 즉 이중으로 표목을 채기하는 것은 ‘표목 그 자체로서 목록조직상 자기의 순서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목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표목은 처음부터 배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문자로 기입되어야 한다³¹⁾고 하여 표목형식을 한글로만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표목형식을 한글로만 하도록 한 KCR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로, 1962년 천혜봉은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에서 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목록의 기초이론과 목록규칙을 다룬 바 있다. 그는 이 것을 “당시까지 새로운 국제적인 목록원리와 기술을 토대로 하여 만든 표준목록규칙 내지 목록법의 연구서가 부재함으로 시작한 시도적 연구”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고서목록 외에 KCR의 편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내비치었다.³²⁾

이 연구가 고서의 목록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표목과 기술의 규칙에 있어서 신서의 목록에도 충분히 준용될 수 있을 만큼 근대적 목록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규칙(안)은 거의 KCR에 벼금가는 것이었다.

천혜봉 자신이 후에 KCR의 제정을 담당했던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대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KCR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1963년 이재철이 루베초키의 *CCR*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을 들 수 있다. *CCR*은 내용의 대부분이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기본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관한 규칙 초안이다. 역자는 이 번역서의 서문에서 우리 나라의 목록규칙이 이 *CCR*과 파리국제목록원칙국제회의에서 결의된 목록원칙에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다³³⁾고 하였다.

이 *CCR*의 내용이나 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의내용이 KCR의 토대가 되었음을 KCR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白麟, “圖書目錄法入門 第四回”, 《도협월보》, Vol. 1, No. 4(1960. 6), pp. 25-30.

白麟, “圖書目錄法入門 第五回”, 《도협월보》, Vol. 1, No. 5(1960. 7,8), pp. 20-24.

31) 白麟, “圖書目錄法入門 第五回”, 위의 글. pp. 20-21.

32) 千惠鳳,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2. 머릿말에서.

33) 씨모어 루베초키 편, 이재철 역, 『목록규칙(CCR) : 저자와 표제 기입』, 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3. p. 1.

위와 같은 목록규칙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KCR 제정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KCR 초안에 직접적으로 기초가 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1. 『미국도서관협회목록규칙』 1949년 판 및 이의 추가 개정판
2. 『바티칸도서관목록규칙』 1948년판
3.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 1948년판.
4. 『일본목록규칙』 1952년판.

이 외에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결정된 여러 원칙을 전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³⁴⁾

ALA 목록규칙 1949년 판은 KCR 초안의 1차 기초자료로 채택되었으며, 또 하나의 기초자료로 채택된 일본목록규칙 1952판 역시ALA목록규칙 1949년 판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KCR 초판은 ALA 목록규칙 1949년 판이 근간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그 이전에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하여 편찬되었던 고재창과 박희영의 목록규칙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목록규칙들이 기초자료에서 배제된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독창성의 결여가 그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편찬과 개정과정

1962년 한국도서관협회는 목록규칙제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목록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목록분과위원장이었던 백린은 당시의 상황을 『韓國目錄規則(案)』(1962년) 「기술위원회 목록분과위원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도협은 1962년도의 사업으로서 우선 목록규칙과 용어집의 간행을 결정하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0인의 기술위원을 위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술위원회는 1962년 5월 14일 회의에서 이 사업의 시급함을 인정하고 목록분과위원회와 용어분과위원회로 분리하여 이 사업을 진행키로 결의하고 각각 5명의 실무위원을 위촉하였던 것입니다.

목록분과위원회는 목록법의 전체의 구성을 「표목의 선정」, 「표목의 형식」, 「기술」, 「편성」의 4단계로 구분하여 1962년도에는 그 중 「표목의 선정」과 「형식」만을 우선 완성하고 이어서 1963년도에 나머지 부분인 「기술」과 「편성」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였던 것

34) 韓國圖書館協會技術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2. p. [ii].

입니다.³⁵⁾

예정대로 1962년 말 기본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부분이 완성되어 1963년 1월에 『韓國目錄規則(案)』이라는 이름의 프린트판으로 출판되었다. 이 규칙(안)은 기본표목에 관한 것으로서 1961년 파리목록원칙회의의 결의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1963년부터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백린 이철규 장일세 등 세 사람으로 목록분과 위원회를 개편하고, 이미 프린트판으로 출판된 기본표목 규칙을 좀더 검토하고 기술목록규칙을 초안하여 1963년 말에 원고를 완성하였으며³⁶⁾ 1964년 1월에 KCR 초판을 발행하였다.

KCR 초판이 발행된 2년 후 그 동안 도서관계의 비판과 실무에 적용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수정판을 내게 되었으며 이 수정판을 통상 KCR 2판이라고 부른다. 수정판은 초판의 교정 및 증보에 주력하였으며 원칙과 내용면에서는 초판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후 수정판이 절판되어 이를 재쇄하는 과정에서 수정판의 오자 탈자 등의 교정이 있었으며 이를 수정판 재쇄로 표기하여 1970년에 출판하였다. 당시 한국도서관협회장이 쓴 서문에는 이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 “목록분과위원장 정필모 선생과 위원제현(委員諸賢)”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⁷⁾

그러나 후일 정필모는 “1970년 3월 수정판을 재쇄할 당시에 필자가 교정을 본 것으로 그 서문에 기록되어 있으나 불행히도 이것은 필자가 전연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³⁸⁾라고 말한 바 있어 이것은 수정판 재쇄 당시 목록분과위원장의 이름을 의례적으로 쓴 것이거나 혹은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정판의 재쇄는 사실상 그 내용 상의 변화가 없는 단지 오, 탈자의 교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2. 체계의 특성

KCR 초판(1964년)과 수정판(1966년)은 그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수정판을 중심으로 체계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일부 바뀐 내용을 살펴본다.

KCR은 전체적으로 단행본에 대한 기본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관한 규칙, 기술규칙을 중심

35) 위의 책. p. [i-ii].

36) 張一世, “韓國目錄規則翻譯後感 : 우리나라 圖書館近代化의 첫걸음”, 『도협월보』 Vol.5, No. 4(1964. 5), p. 26.

37)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再刷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0. 修正版再刷 序文에서.

38) 鄭曉謨, “韓國目錄規則의 問題點과 그 改定의 前提”, 『도서관』 Vol. 29, No. 6(1974. 6), p. 5.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단행본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 연속간행물의 목록규칙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KCR을 제정하기 위한 초기의 계획에 따르면 ‘목록의 편성’에 대한 규칙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목록의 편성’에 관한 규칙은 초판 뿐 아니라 수정판에도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KCR은 기본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관한 규칙, 그리고 단위카드의 기술규칙에 그치고 있다. 다만 부출지시에 관한 규칙과 분출에 관한 원칙을 둘으로써 기본목록 외에 어떤 종류의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수정판에서는 이러한 목록들의 기술 형식에 대하여 각종 목록의 실례를 첨부하여 실무에 참고케 하였다.

수정판이 초판에 비해 달라진 점은 기본표목에 관한 규칙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보인다. 기본표목 선정에 관한 규칙이 초판에는 자료의 종류별로 단순히 열거만 하였는데 비하여 수정판에서는 이들을 ‘이미 출판된 저작과 관련된 저작’, ‘여러 가지 형식의 저작’, ‘저자명을 잘 알 수 없는 저작’ 등의 단락으로 군집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순서를 바꾸고 백과사전, 일반사전, 기념논문집, 제판(諸版), 무저자명고전 등 몇 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수정판에서는 공저서도 합저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수가 4인 이상일 경우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표목의 선정’을 ‘기본기입의 선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 달라졌다.

3. 내용의 특성

(1) 표목에 관한 규칙

장일세는 KCR 초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저자명주기입형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서명주기입에서 저자명주기입에의 전환은 도서관의 현대화를 위하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명제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표목기입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로도 쓰고 한글로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로만 쓰기로 한 까닭에 번거로운 표기를 하지 않아도 좋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목록배열이 꽤 간편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주기입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제지에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 …

셋째는 외국인명 등을 번자표목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2항을 이해하신다면 수긍이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것을 역시 한글로 번자하여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모든 표목을 한글로 통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 배열도 편리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는 구두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명이 표목으로 쓰일 때에도 성과 이름 사이에 반드시 콤마를 찍도록 함으로써 성명을 확실히 구별하고 배열에도 혼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39)

장일세는 이중에서도 특히 저자명기본표목형식을 취한 것과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쓰기로 한 것을 KCR의 초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어느 나라보다 앞선 규칙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도 일시적으로 서명기본표목원칙과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당시 기본표목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백린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부산 피난시절) 구덕수원지 옆에 가건물을 짓고 서울 본교에 올라와 동서양 서 2만권을 반출하여 갈 때 일본도서관협회 잡지와 일본청년도서관연맹이 발간한 《도서관 연구》를 몽땅 가지고 내려가 다 읽었다. 거기서 DDC와 LC 그리고 사전체목록, 주기입론의 논쟁을 알게되었다. 도서관 강습회 후 서명기입을 주장한 것은 국립도서관을 위시하여 조선 도서관학교 출신이며 저자주기입을 주장한 것은 백린 나였다. 사실 당시에 있어서 저자주기입이나 서명주기입이나 하고 떠들었지만 자신 있게 논의를 제기할 만치 entry에 대한 개념이나 그 특성을 충분히 연구한 근거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은 아니다.⁴⁰⁾

이에 따르면 당시 국립도서관이나 조선도서관학교 출신의 도서관인들은 박봉석의 『朝鮮東書編目規則』에 영향을 입어 서명기본표목원칙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양서목록에 주로 사용되었던 영미계목록규칙을 접한 백린과 같은 사람들은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주장

39) 張一世, "韓國目錄規則編輯後感 : 우리나라 圖書館近代化의 첫걸음", 앞의 글, pp. 26-27.

40) 백린 선생의 서신(2001. 5.) 중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기본표목에 관한 논쟁은 KCR에서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의안인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쉽게 끝나게 되었다.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앞서 보았듯이 백린의 1960년 《도협월보》지상 실무강좌에서부터 보이는데 이것이 KCR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되었다. KCR에서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하도록 한 것은 고재창이나 박희영의 목록규칙이 한자로 기입하고 이를 로마자나 한글로 표기하도록 한데 비하여 특이한 것이었다.

박희영은 표목을 한자로 표기하면 기술사항에서 다시 한 번 저자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간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 이외에 중국과 일본서의 경우 한글 표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였다.⁴¹⁾

이러한 주장은 박봉석 고재창 그리고 박희영 자신이 제안한 목록규칙에서 지켜져 오던 표목의 표기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도서에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또한 목록에서 표목과 기술이 분리됨과 더불어 표목은 접근점으로, 기술은 식별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일찍이 표목을 배열과 검색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만 표기하게 한 것은 대단히 진보적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동열은 특히 대학도서관이나 학술도서관에서 동서와 양서의 일원화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모든 표목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KCR의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한다는 원칙은 표목의 형식에 대한 원칙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한 것⁴²⁾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동서의 양이 많지 않거나 목록을 언어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서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 사정에 비추어보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각 국어별로는 구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서와 양서, 혹은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목록파일을 구분하는 것이 목록 검색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CR에서 서명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된 경우 서명이 기본표목의 기능과 함께 기술사

41) 朴熙永, "東書目錄記入에 있어서의 基本問題", 앞의 글, p. 18.

42) 柳東烈, "圖書編目上 標目的 表記에 關하여 : 特히 大學圖書館의 目錄에 있어서", 《國會圖書館報》 Vol. 2, No. 3(Mar. 1965), p. 21, 26.

항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므로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정보원에 나타난 형태대로 채기한다⁴³⁾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KCR의 기본원칙과는 달리 표목이 한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생기며 이때만은 배열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로 된 서명 위에 한글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치우는 이것이 ‘표목은 한글로만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표목형식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여 그 대안으로 서명이 기본표목이 되는 경우에도 한글표목을 먼저 기재하고 이어서 한자로 된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기재 형식은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저자명표목과는 달리 기술사항으로서의 서명과 같은 행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⁴⁴⁾이라고 하였다.

어느 방법이든 오늘날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MARC에서는 서명이 기본표목이 될 경우 1XX 필드는 기입하지 않고 기본표목으로서의 서명을 245 필드에만 입력하며, 이때 서명이 한자로 입력된 경우에도 이를 자동으로 한글로 번자하여 배열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저자명표목의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는 원칙이 후일 도서관계의 논쟁 거리가 되었는데 이 것은 *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1957년)에서 한국과 중국의 저자명표목은 그 성 아래 기재하고 성과 이름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도록⁴⁵⁾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장일세는 출판물의 국제적 교류와 목록의 표준화를 이유로 이 규칙의 존속을 주장하고 그 당위성의 근거로 NCR 1965년 판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을 들었다.⁴⁶⁾ 또한 천혜봉도 이 규칙이 단순히 외래풍을 습용(襲用)한 것이 아니라 사전체목록 또는 저자, 서명목록을 단일 조작할 때 동일한 성의 저자를 한 곳에 배열하기 위해서는 쉼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배열도 실수가 없는데서 취해진 조처라고⁴⁷⁾하여 이 규칙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재철은 우리나라나 중국 인명과 같이 원래 인명의 구조가 성·명 순으로 되어 있고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직순으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규정이 표목형식을 로마자로 하는 영미계 목록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요소가 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고 함으로써 이 규정이 영미계 목록규칙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⁴⁸⁾

43)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8. p. 135.

44) 金致雨, “現行書名基本記入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도협월보》 Vol. 15, No. 8(1974. 8), pp. 24-30 참 고

45) Library of Congress, Processing Department, 앞의 책. p. 8, 10.

46) 張一世, “韓國 目錄의 現況과 그 將來”, 앞의 글. pp. 39-40.

47) 千惠鳳, “韓國目錄規則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Vol. 2, No. 3(1965. 3), p. 9.

정필모도 한국인명의 경우 일반관례상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는 경우는 없으므로 성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저자명표목의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배열과 검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⁴⁹⁾고 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이 원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쉼표를 찍지 않는 쪽의 우세로 이어지게 되었고 KCR 3판에서는 저자명의 성과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찍지 않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었다.⁵⁰⁾

(2) 기술에 관한 규칙과 기타 문제점

KCR 수정판에서는 단행본의 기술 사항과 기술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⁵¹⁾

1. 서명
2. 저자표시
3. 권차사항(*초판에서는 서명다음에 기술)
4. 판차
5. 출판사항
 - a. 출판지, b. 출판자(발행자), c. 출판년
6. 대조사항
 - a. 면수, b. 도판, 표, 삽도류, c. 크기, d. 장정
7. 주기사항

KCR의 기술 사항의 종류와 기술순서는 『韓銀圖書編目法』이나 『東書編目規程』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韓銀圖書編目法』이나 『東書編目規程』에서는 출판사항의 끝에 기술하였던 판종(版種)을 KCR에서는 주기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권차사항을 초판까지는 서명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수정판에서는 저자표시 다음으로 옮겼다.

KCR에서 판종을 주기사항으로 옮긴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의 독특한 기술 사항이기 때문에 서명에서부터 출판사항에 이르는 기술의 본체에 대한 형식을 국제적 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CR 수정판에서 권차사항을 저자사항 뒤로 옮긴 것은 NCR 1952년 판이나, 고재창, 박희영의 규칙들이 모두 KCR 초판과 마찬가지로 권차사항을 서명 다음에 기술하도록 한 데 비

48)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 第1輯(1970), pp. 28-29.

49) 韓國圖書館協會 制定, 『韓國目錄規則 : 記述·標目·索引指示篇』, 3版, 서울 : 同協會, 1983. p. 7.

50)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 同協會, 1966. pp. 81-128에서 발췌.

해 특이하다. 이후의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판에서는 권차의 기술위치를 저자명과 출판사항 사이에 두도록 함으로써 KCR 수정판과 일치하고 있다.

그 외에 후일 KCR 수정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KCR 수정판이 갖는 전반적 문제점들도 지적된 바 있다.

먼저 KCR 제정에 직접 참여했던 장일세 스스로도 ①일관성이 결여된 점, ②예시가 불충분한 점 ③예시와 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⁵²⁾

장일세가 규칙의 내용이나 원칙에 관한 것보다는 주로 구성에 관한 미비점만을 포괄적으로 지적한데 비하여 정필모는 개정의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 1) '목록규칙', '기술규칙' 등의 용어는 '편목규칙'과 '목록기술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2)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하며 특히 '기입'과 '표목'의 개념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입'은 '저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3) 문장으로서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 4) 제9조의 "제판"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애매하며, 9조는 11조 및 16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9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 5) 84조 a항에서 개인전집의 서명 첫머리에 붙는 저자명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완전한 서명으로 기입해야 한다.
- 6) 예시가 부족하고 어떤 예시는 적절하지 못하다.
- 7) 표목의 성과 이름 사이에 점을 찍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 8) 비도서자료에 대한 편목규칙과 카드 배열규칙이 추가되기를 바란다.⁵³⁾

KCR은 제정 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체제나 사소한 용어상의 문제였으며 논의의 핵심은 주로 앞에서 다루었던 표목에 관한 것이었다.

기본표목의 선택에 관한 원칙은 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의안을 따라 국제적 조류를 수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큰 이견이 없었으나 언어의 형태나 관습의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표목의 형식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52) 張一世, "韓國目錄規則의 現況과 그 將來", 앞의 글, pp. 41-42.

53) 魁馳謨, 앞의 글, p. 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CR은 영미계 목록규칙과 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목록규칙의 국제적 표준에 부응하려고 한 특성을 갖는 한편 현토서, 훈점서, 비점서·금석문·족보·계보, 세보·봉명관찬서(奉命官撰書)·지방관찬서 등과 같은 동양의 고서 목록에도 준용할 수 있는 규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서관계 실정을 감안한 목록규칙이었다.

천혜봉이 “자주적인 터전 위에서 건전한 성장의 정향점을 찾기 위한 첫 일보로서 독자적인 목록규칙의 제정을 결의하고, … 외래적인 이론과 실제를 우리 실정과 생리에 맞도록 조리하여 자주적인 경험을 쌓아 나갈 터전을 이로써 마련하였으니 그 의의가 실로 지대하다”⁵⁴⁾라고 평가한 것처럼 KCR은 국제적 이론을 도입하여 표준화라는 성과를 이룩함과 동시에 우리 도서관계의 실정을 고려한 자주적 목록규칙의 시발점이었다고 하겠다.

V. 맷는 말

우리 나라에서는 1954년 처음으로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한 『韓銀圖書編目法』이 편찬되었으므로 이때부터를 국제 표준화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韓銀圖書編目法』 이후 KCR 수정판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 편찬된 목록규칙을 중심으로 그 편찬 배경과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이 시기의 목록규칙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에는 서적의 국제적 교류와 이에 대비한 서지적 기록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목록규칙에 대한 국제적 조류나 합의안을 수용하여 여기에 일치하는 목록규칙을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초기까지도 일제시대 이후 지속된 일역(日譯) 서구문명의 영향과 함께 목록규칙에서도 일본목록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이 시기에는 목록의 기술부보다는 기본표목의 선택에 관한 원칙에서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고서목록에서부터 일제시대, 해방 후 『朝鮮東書編目』에 이르기까지도 주로 서명을 모두(冒頭)에 기입하여 목록을 기술하였거나 서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였는데 비하여 이 시기에는 영미계 목록규칙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국제적 표준안으로 결의된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목록규칙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54) 千惠鳳, “韓國目錄規則에 對하여”, 앞의 글, pp. 5-6.

셋째, 이 시기 초까지도 표목을 한자로 기재하였던 원칙이 KCR에 이르러서는 한글로만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이로 말미암아 목록에서 표목이 식별기능보다는 검색기능을 강하게 갖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나라의 목록에서 표목과 기술부의 분리를 보다 수월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넷째, KCR 초판에서부터 동양인명표목에서도 서양인명과 마찬가지로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으나 결과는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지 않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게 되었다.

다섯째, 이 시기까지는 주로 카드 형태의 목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고재창의 규칙에서 는 기본목록을 단위카드로 하여 이를 복사하여 부출목록을 만드는 목록작성법도 소개되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